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25.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24.10.01.부터 사전선정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우선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정보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외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수탁자)	코리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110111-2937831
위탁자	(주)은성종합개발	경기도 화성시 동탄1기흥로 147-11, 1동 507호 (방고동, 씨에이치비로오피스텔)	214911-0034159
시공자	라온건설(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곡로 998, 비동 1층	190111-0006492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동엔지니어링	(주)삼방감리	태인엔지니어링(주)
감리금액	2,128,010,500원	532,576,480원	484,000,000원	66,000,000원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일정	2025.08.04.(월)	2025.08.05.(화)	2025.08.06.(수)	2025.08.12.(화)	2025.08.16.(토)~2025.08.22.(금)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1-1번지)	2025.08.25.(월)~2025.08.27.(수)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 642호(2025. 7. 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09-10번지 일대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0~29층 7개동 총 507세대 (일반공급 231세대, 특별공급 276세대)

(특별공급 276세대(기관추천 50세대, 다자녀가구 50세대, 신흥부부 116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4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743대(당애인주차 포함, 근린생활시설 6대 제외, 세대당 1.47대)

■ 입주시기: 2028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차 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 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81	01	084.9974A	84A	84.9974	28.2315	113.2289	55.8387	169.0676	46.1512	366	36	36	84	11	33	200	166	18	
	02	084.9943B	84B	84.9943	28.2305	113.2248	55.8365	169.0613	46.1495	141	14	14	32	4	12	76	65	8	
				합계						507	50	50	116	15	45	276	231	26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사) 주택형		084.9974A		084.9943B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타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84A	366	103동 1,2,4호 104동 24호 105동 12,3,5호 106동 24호	2층	11	96,990,534	348,109,466	445,100,000	10,000,000	3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133,530,000
			3층	11	96,990,534	357,909,466	454,900,000	10,000,000	35,490,000	45,490,000	45,490,000	45,490,000	45,490,000	45,490,000	45,490,000	136,470,000
			4층	11	96,990,534	367,609,466	464,600,000	10,000,000	3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139,380,000	
			5~9층	55	96,990,534	382,309,466	479,300,000	10,000,000	37,930,000	47,930,000	47,930,000	47,930,000	47,930,000	47,930,000	143,790,000	
		10층 이상	180	96,990,534	392,009,466	489,000,000	10,000,000	3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2층	7	96,990,534	339,459,466	436,450,000	10,000,000	33,645,000	43,645,000	43,645,000	43,645,000	43,645,000	43,645,000	130,935,000		
		3층	7	96,990,534	349,209,466	446,200,000	10,000,000	34,620,000	44,620,000	44,620,000	44,620,000	44,620,000	44,620,000	133,860,000		
		4층	7	96,990,534	358,909,466	455,900,000	10,000,000	3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136,770,000		
		5~9층	35	96,990,534	373,309,466	470,300,000	10,000,000	3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47,030,000	141,090,000		
		10층 이상	42	96,990,534	383,009,466	480,000,000	10,000,000	3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84B	141	103동 3호 104동 13호 105동 4호 106동 13호	2층	6	96,986,962	341,913,038	438,900,000	10,000,000	3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43,890,000	131,670,000	
			3층	6	96,986,962	351,663,038	448,650,000	10,000,000	34,865,000	44,865,000	44,865,000	44,865,000	44,865,000	44,865,000	134,595,000	
			4층	6	96,986,962	361,413,038	458,400,000	10,000,000	35,840,000	45,840,000	45,840,000	45,840,000	45,840,000	45,840,000	137,520,000	
			5~9층	30	96,986,962	375,863,038	472,850,000	10,000,000	37,285,000	47,285,000	47,285,000	47,285,000	47,285,000	47,285,000	141,855,000	
		10층 이상	62	96,986,962	385,513,038	482,500,000	10,000,000	3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144,750,000		
		2층	2	96,986,962	333,713,038	430,700,000	10,000,000	33,07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43,070,000	129,210,000		
		3층	2	96,986,962	343,313,038	440,300,000	10,000,000	3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132,090,000		
		4층	2	96,986,962	352,813,038	449,800,000	10,000,000	3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34,940,000		
		5~9층	10	96,986,962	367,013,038	464,000,000	10,000,000	3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10층 이상	15	96,986,962	376,513,038	473,500,000	10,000,000	37,350,000	47,350,000	47,350,000	47,350,000	47,350,000	47,350,000	142,05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외국인인 주민등록본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흥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외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등, 장기 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태아, 임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생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외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정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2-3 신흥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흥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외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